

---

2021년

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---

2022. 2.



**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**  
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

## 순서

I. 산출 기준 .....	1
II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.....	2
II-1. 전체 사건 .....	2
II-2. 일반 사건 .....	3
III. 용어 정의 .....	4

# I. 산출기준

## □ 산출 기준

- 본 통계 자료는 2021. 1. 1. ~ 2021. 12. 31.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 기준
-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, 기준 및 단위는 오른쪽 위에 표시함.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
- '-':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

- '일반 사건'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(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8항, 이하 의료분쟁조정법)이며, '전체 사건'은 위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\*을 갖출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9항)의 계수를 합친 통계임

\*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## II. 2021년 지역별·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### II-1. 전체 사건

(2021.1.1. ~ 2021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)

구분	계	상급 종합	종합 병원	병원	의원	치과 병원	치과 의원	한방 병원	한의원	기타**	
계	개시	1,425	291	382	281	274	10	128	6	14	39
	각하	734	98	142	146	228	8	76	10	13	13
	개시율	66.0	74.8	72.9	65.8	54.6	55.6	62.7	37.5	51.9	75.0
서울	개시	448	113	89	76	109	3	44	2	8	4
	각하	272	47	33	38	104	4	35	3	4	4
	개시율	62.2	70.6	73.0	66.7	51.2	42.9	55.7	40.0	66.7	50.0
경기	개시	276	18	98	66	49	1	29	3	2	10
	각하	156	18	46	24	42	1	15	3	4	3
	개시율	63.9	50.0	68.1	73.3	53.8	50.0	65.9	50.0	33.3	76.9
인천	개시	73	12	22	17	13	-	5	1	-	3
	각하	42	16	4	11	8	-	3	0	-	0
	개시율	63.5	42.9	84.6	60.7	61.9	-	62.5	100.0	-	100.0
부산	개시	132	24	29	31	35	1	7	-	0	5
	각하	83	2	17	29	21	1	5	-	4	4
	개시율	61.4	92.3	63.0	51.7	62.5	50.0	58.3	-	0.0	55.6
경남	개시	80	20	22	15	14	1	4	-	-	4
	각하	31	2	3	12	9	1	3	-	-	1
	개시율	72.1	90.9	88.0	55.6	60.9	50.0	57.1	-	-	80.0
울산	개시	16	4	3	5	2	-	2	0	-	-
	각하	12	1	2	5	3	-	0	1	-	-
	개시율	57.1	80.0	60.0	50.0	40.0	-	100.0	0.0	-	-
대구	개시	63	28	7	12	5	1	7	-	-	3
	각하	25	6	1	5	11	0	0	-	-	0
	개시율	71.6	82.4	87.5	70.6	31.3	100.0	100.0	-	-	100.0
경북	개시	39	-	21	7	5	-	4	0	1	1
	각하	20	-	6	7	2	-	3	1	1	0
	개시율	66.1	-	77.8	50.0	71.4	-	57.1	0.0	50.0	100.0
광주	개시	32	14	3	5	5	-	2	0	-	3
	각하	12	1	2	2	4	-	2	1	-	-
	개시율	72.7	93.3	60.0	71.4	55.6	-	50.0	0.0	-	100.0
전북	개시	41	10	7	9	5	1	7	-	1	1
	각하	13	1	2	4	5	0	1	-	0	0
	개시율	75.9	90.9	77.8	69.2	50.0	100.0	87.5	-	100.0	100.0
전남	개시	27	4	7	12	2	-	1	-	-	1
	각하	10	0	3	2	5	-	0	-	-	0
	개시율	73.0	100.0	70.0	85.7	28.6	-	100.0	-	-	100.0
제주	개시	9	-	8	1	-	-	0	-	-	-
	각하	6	-	5	0	-	-	1	-	-	-
	개시율	60.0	-	61.5	100.0	-	-	0.0	-	-	-
대전	개시	65	10	26	12	6	2	7	-	-	2
	각하	10	0	2	3	4	0	1	-	-	0
	개시율	86.7	100.0	92.9	80.0	60.0	100.0	87.5	-	-	100.0
충남	개시	40	15	2	6	13	0	2	-	1	1
	각하	18	2	7	3	2	1	3	-	0	0
	개시율	69.0	88.2	22.2	66.7	86.7	0.0	40.0	-	100.0	100.0
충북	개시	29	4	12	5	6	-	-	0	1	1
	각하	10	-	2	1	5	-	-	1	0	1
	개시율	74.4	100.0	85.7	83.3	54.5	-	-	0.0	100.0	50.0
세종	개시	8	-	5	-	1	-	2	-	-	-
	각하	2	-	1	-	1	-	0	-	-	-
	개시율	80.0	-	83.3	-	50.0	-	100.0	-	-	-
강원	개시	47	15	21	2	4	-	5	-	-	-
	각하	12	2	6	0	2	-	2	-	-	-
	개시율	79.7	88.2	77.8	100.0	66.7	-	71.4	-	-	-

\* 개시율 : 개시건수 ÷ ( 개시건수 + 각하건수 ) × 100 \*\* 요양병원, 약국, 보건소

## II-2 일반 사건

(2021.1.1. ~ 2021.12. 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)

구분		계	상급 종합	종합 병원	병원	의원	치과병원	치과 의원	한방 병원	한의원	기타**
계	개시	1,045	150	234	235	255	10	126	5	14	16
	각하	734	98	142	146	228	8	76	10	13	13
	개시율	58.7	60.5	62.2	61.7	52.8	55.6	62.4	33.3	51.9	55.2
서울	개시	346	64	54	69	105	3	42	1	8	0
	각하	272	47	33	38	104	4	35	3	4	4
	개시율	56.0	57.7	62.1	64.5	50.2	42.9	54.5	25.0	66.7	0.0
경기	개시	196	4	54	55	46	1	29	3	2	2
	각하	156	18	46	24	42	1	15	3	4	3
	개시율	55.7	18.2	54.0	69.6	52.3	50.0	65.9	50.0	33.3	40.0
인천	개시	47	4	14	10	11	-	5	1	-	1
	각하	42	16	4	11	8	-	3	0	-	0
	개시율	52.8	20.0	77.8	47.6	57.9	-	62.5	100.0	-	100.0
부산	개시	92	5	18	25	35	1	7	-	0	1
	각하	83	2	17	29	21	1	5	-	4	4
	개시율	52.6	71.4	51.4	46.3	62.5	50.0	58.3	-	0.0	20.0
경남	개시	60	11	17	13	12	1	4	-	-	2
	각하	31	2	3	12	9	1	3	-	-	1
	개시율	65.9	84.6	85.0	52.0	57.1	50.0	57.1	-	-	66.7
울산	개시	14	3	2	5	2	-	2	0	-	-
	각하	12	1	2	5	3	-	-	1	-	-
	개시율	53.8	75.0	50.0	50.0	40.0	-	100.0	0.0	-	-
대구	개시	42	14	3	11	4	1	7	-	-	2
	각하	25	6	1	5	11	0	2	-	-	0
	개시율	62.7	70.0	75.0	68.8	26.7	100.0	77.8	-	-	100.0
경북	개시	28	-	14	4	4	-	4	0	1	1
	각하	20	-	6	7	2	-	3	1	1	0
	개시율	58.3	-	70.0	36.4	66.7	-	57.1	0.0	50.0	100.0
광주	개시	22	7	2	4	5	-	2	0	-	2
	각하	12	1	2	2	4	-	2	1	-	0
	개시율	64.7	87.5	50.0	66.7	55.6	-	50.0	0.0	-	100.0
전북	개시	30	5	4	8	4	1	7	-	1	-
	각하	13	1	2	4	5	0	1	-	0	-
	개시율	69.8	83.3	66.7	66.7	44.4	100.0	87.5	-	100.0	-
전남	개시	19	3	3	10	1	-	1	-	-	1
	각하	10	0	3	2	5	-	0	-	-	0
	개시율	65.5	100.0	50.0	83.3	16.7	-	100.0	-	-	100.0
제주	개시	6	-	5	1	-	-	0	-	-	-
	각하	6	-	5	0	-	-	1	-	-	-
	개시율	50.0	-	50.0	100.0	-	-	0.0	-	-	-
대전	개시	49	7	16	9	6	2	7	-	-	2
	각하	10	0	2	3	4	0	1	-	-	0
	개시율	83.1	100.0	88.9	75.0	60.0	100.0	87.5	-	-	100.0
충남	개시	30	10	1	5	10	0	2	-	1	1
	각하	18	2	7	3	2	1	3	-	0	0
	개시율	62.5	83.3	12.5	62.5	83.3	0.0	40.0	-	100.0	100.0
충북	개시	22	4	7	4	6	-	-	0	1	0
	각하	10	0	2	1	5	-	-	1	0	1
	개시율	68.8	100.0	77.8	80.0	54.5	-	-	0.0	100.0	0.0
세종	개시	6	-	3	-	1	-	2	-	-	-
	각하	2	-	1	-	1	-	0	-	-	-
	개시율	75.0	-	75.0	-	50.0	-	100.0	-	-	-
강원	개시	36	9	17	2	3	-	5	-	-	-
	각하	12	2	6	0	2	-	2	-	-	-
	개시율	75.0	81.8	73.9	100.0	60.0	-	71.4	-	-	-

\* 개시율 : 개시건수 ÷ ( 개시건수 + 각하건수 ) × 100 \*\* 요양병원, 약국, 보건소

## II. 용어 정의

### ① 의료분쟁 관련 용어 정의

#### ○ 조정

-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,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36조)

#### ○ 중재

-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(私法) 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,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44조)

#### ○ 조정 절차 개시

-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고,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함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8항)
- 다만, '16.11.30.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의 대상이 사망, 1개월 이상 의식 불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급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에 조정절차는 개시됨

### ② 보건의료기관 종별 유형 정의

#### ○ 상급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2. 「의료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
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추는 것
4.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4제1항 및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별표)

#### ○ 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함

1.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
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·외과·소아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3.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3제1항)

#### ○ 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#### ○ 의원

-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#### ○ 치과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치과의원

-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한방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한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한의원

-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요양병원

- 30개 이상의 요양병상(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)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약국

-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[약국제제(藥局製劑)를 포함한다]를 하는 장소(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예외로 함(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)

○ 보건소(보건지소)

-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·군·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으로서, 보건소의 지소를 보건지소라 함(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)

○ 보건의료원

- 보건소 중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하며, 보건소 업무에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한 것으로 주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함(「지역보건법」 제8조)